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명변경

-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⇒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조제5항)

- 위원의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하는 단서조항 신설
-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 대상에 반영하는 내용 추가

○ 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추가(안 제4조제5호 및 제4조제6호)

-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11.10 ~ 11.30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2016. 01. 19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과 「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분법·공포되어 상위법령인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(목적)에서 조례의 제명을「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「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였고, 안 제2조(위원회의 구성) 제1항에서 부동산평가위원의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과 제5항에서는 부동산 평가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(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)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 대상에 포함하였으며, 안 제4조(기능)에서는 심의·결정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.

○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